

## 정신(요양·재활)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

정신(요양·재활)시설 내 거주하는 코로나19 확진환자를 대상으로 처방, 처치 등 방문진료 실시하는 경우 산정 가능한 수가 및 청구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

- 다 음 -

### 1 요양급여 대상

- (대상환자) 정신(요양·재활)시설\* 내 코로나19 확진환자 또는 코로나19 격리해제 후 28일 이내에 있는 환자\*\*

\* 「정신건강복지법」 제22조 및 제26조에 따라 설치된 정신요양시설, 정신재활시설  
\*\*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의한 가입자와 피부양자 및 「의료급여법」에 의한 수급권자

- (대상기관) 중앙사고수습본부(정신병원·시설대응팀)에서 ‘정신(요양·재활)시설 의료기동전담반 운영 의료기관’으로 지정·통보받은 요양기관

### 2 요양급여 적용수가

- “정신(요양·재활)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” 산정

분류번호	코드	분류	점수(점)
코로나19 관련	AH147	정신(요양·재활)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가. 정신(요양·재활)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코로나19 격리 기간 방문료 (1) 상급종합병원, 종합병원, 병원, 정신병원, 요양병원·한방병원·치과병원·보건의료원 내 의과, 의원	551.40
	AH148	나. 정신(요양·재활)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코로나 19 격리해제 후 방문료 (1) 상급종합병원, 종합병원, 병원, 정신병원, 요양병원·한방병원·치과병원·보건의료원 내 의과, 의원	551.40

### ○ 산정기준 및 방법

제목	세부내용
적용대상	정신(요양·재활)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팀(의사 1명 포함)이 정신(요양·재활)시설 내 코로나19 확진된 환자 또는 기존에 코로나19 확진되어 격리해제 후 28일 이내에 있는 환자를 방문진료 한 경우
산정방법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정신(요양·재활)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코로나19 격리기간 방문료는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지침」에 의한 격리기간 동안 산정</li> <li>2. 정신(요양·재활)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코로나19 격리해제 후 방문료는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지침」에 의한 격리해제일부터 28일 이내 산정</li> <li>3. ‘정신(요양·재활)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’는 1일 1회 산정</li> <li>4. 방문진료를 실시하는 의사 1인당 1일 50명까지 산정</li> <li>5. 행위·약제 및 치료재료 별도 산정 가능</li> <li>6. 야간·공휴, 토요일, 심야 등 각종 가산적용 불가</li> <li>7. 재택치료 적용수가와 중복 산정 불가</li> <li>8. 시범사업 관련 방문료(중증소아재택의료관리료·방문료, 방문진료, 장애인건강관리료·방문료 등), 가-13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등 방문료와 중복 산정 불가</li> <li>9. 이 외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및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등에 따라 산정함</li> </ol>

### 3 환자 본인부담률 및 본인부담금 지원

- (환자 본인부담률) 법정 외래 환자본인부담률\* 적용

\*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[별표2] 및 「의료급여법」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[별표1]

○ **본인부담금 지원**

- '정신(요양·재활)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코로나19 격리기간 방문료' 및 해당 진료비는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진료비 지원 대상이므로 별도로 수납하지 않음

\* 기저질환 등 타 상병으로 방문진료(조제)를 받는 경우 진료비 비지원대상임

- '정신(요양·재활)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코로나19 격리해제 후 방문료' 및 해당 진료비는 비지원대상임

④ **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**

- (공통사항) '정신(요양·재활)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'는 "01항" (진찰료) "03목"(응급 및 회송료 등)에 기재

가. "정신(요양·재활)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코로나19 격리기간 방문료"

- (의료기관) '정신요양(재활)시설 의료기동전담반 코로나19 격리기간 방문료' 및 해당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명세서 특정내역 기재란에 ①~③을 기재

① MT043(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): "3/02"를 기재

② MX999(기타내역): "E/ 정신요양재활시설"을 기재

\* 단, 코로나19와 관련 없는 타 상병 진료내역은 명세서를 구분·작성하여 분리 청구함

③ JX999(기타내역): '검체채취일자'를 "CCYYMMDD" 형식(8자리)으로 기재

※ 코로나19 양성 결과를 확인한 검사의 검체채취일자

④ (처방전) 방문한 의사가 코로나19 확진 환자에게 코로나19 치료 관련으로 원외처방하는 경우 처방전 발행 시 처방전의 '조제시참고사항'란에 "E/ 정신요양재활시설"을 기재

- (약국)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기재된 "E/정신요양재활시설"을 확인하여 청구 시 명세서 특정내역 기재란에 ①, ②를 기재

① MT043(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): "3/02"를 기재

② MX999(기타내역): "E/ 정신요양재활시설"을 기재

나. "정신(요양·재활)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코로나19 격리해제 후 방문료"

- (의료기관) '정신(요양·재활)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코로나19 격리해제 후 방문료' 및 해당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특정내역 구분코드 ①, ②와 처방전 조제시 참고사항란(④)은 별도 기재하지 않음

- 단, 명세서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JX999(기타내역)에 '격리해제일자'를 "CCYYMMDD" 형식(8자리)으로 기재

※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지침」에 따른 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해제일자

⑤ **기타 행정사항**

- (적용 진료분) 2022.8.1. 진료분부터 별도 종료 안내 시까지

\*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022.8.8.부터 가능

## 붙임. 정신(요양·재활)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관련 질의·답변

### 1 정신(요양·재활)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관련

연번	질 의	답 변
1-1	정신(요양·재활)시설에 방문 진료 시 진찰료, 의료질평가지원금 수가 산정 가능한지?	○ 정신(요양·재활)시설에 방문진료 후, '정신(요양·재활)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'를 산정한 경우, ①가-1 외래환자 진찰료, ②의료질평가지원금*, ③교통비는 산정 불가함  *가-22의료질평가지원금, 가-24-1 전문병원의료 질평가지원금  - 단, 관련 행위·약제 및 치료재료는 별도 산정 가능함
1-2	2개 이상의 정신(요양·재활)시설을 방문하여 진료하는 경우, '정신(요양·재활)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' 산정 가능한 횟수는?	○ '정신(요양·재활)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'는 의사1인당 1일 50명까지 산정 가능함
1-3	코로나19 확진환자의 경우, 코로나 관련 증상과 기저질환 등 타상병 진료 시 별도의 명세서로 분리청구해야 하는지?	○ 코로나19 확진환자를 방문 진료한 경우, 코로나 증상 진료로 국비지원되는 명세서와, 기저질환 등 타 상병 진료내역 명세서는 별도 구분·작성하여 분리 청구함
1-4	코로나 19 확진된 정신(요양·재활)시설 입소자가 격리 기간에 방문 진료 후 당일 입원하는 경우 청구방법은?	○ 방문 진료 후 당일 동일요양기관에 입원하는 경우 입원명세서에 작성하되, 본인부담금 지원 명세서(특정내역 MT043 "3/02" 기재)에 합산하여 작성함

연번	질 의	답 변											
		* (예시) 정신(요양·재활)시설 내 코로나19 확진 환자 방문진료 후 당일에 입원한 경우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특정내역 (MT043)</th> <th>본인 부담률</th> <th>진료내역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입원 명세서 1</td> <td>"3/02" 기재</td> <td rowspan="2">입원환자 본인부담률</td> <td>정신(요양·재활)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및 코로나19 관련 격리입원 치료비</td> </tr> <tr> <td>입원 명세서 2</td> <td>-</td> <td>외래 진료비 및 타상병 진료비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특정내역 (MT043)	본인 부담률	진료내역	입원 명세서 1	"3/02" 기재	입원환자 본인부담률	정신(요양·재활)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및 코로나19 관련 격리입원 치료비	입원 명세서 2	-	외래 진료비 및 타상병 진료비
구분	특정내역 (MT043)	본인 부담률	진료내역										
입원 명세서 1	"3/02" 기재	입원환자 본인부담률	정신(요양·재활)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및 코로나19 관련 격리입원 치료비										
입원 명세서 2	-		외래 진료비 및 타상병 진료비										
1-5	정신(요양·재활)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진료한 당일, 동일 질환으로 재택치료 또는 대면진료를 제공한 경우 수가 산정방법은?	○ '정신(요양·재활)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'는 산정 가능하나, 재택치료 적용 수가 또는 대면진료 시 진찰료는 산정 불가함											
1-6	정신(요양·재활)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'를 산정할 수 있는 기관은?	○ 중앙사고수습본부(정신병원·시설대응팀)에서 '정신(요양·재활)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운영 의료기관'으로 지정·통보 받은 요양기관에서 산정 가능함  * 확인방법: 중앙사고수습본부 정신병원·시설대응팀 문의											
1-7	정신(요양·재활)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진료 시 진료내역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금이 국비지원 되는지?	○ 정신(요양·재활)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진료 시 코로나19질환관련 진료내역의 환자 본인부담금은 국비지원 대상임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코로나19 질환관련 진료내역</th> <th>타 상병관련 진료내역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코로나19 확진자 (격리 중)</td> <td>본인부담금 국비 지원</td> <td>본인부담금 국비 미지원</td> </tr> <tr> <td>격리 해제 후 28일 이내에 있는 자</td> <td>-</td> <td>본인부담금 국비 미지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※ 코로나19관련 진료 본인부담금지원여부에 대한 문의 :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관리팀	구분	코로나19 질환관련 진료내역	타 상병관련 진료내역	코로나19 확진자 (격리 중)	본인부담금 국비 지원	본인부담금 국비 미지원	격리 해제 후 28일 이내에 있는 자	-	본인부담금 국비 미지원		
구분	코로나19 질환관련 진료내역	타 상병관련 진료내역											
코로나19 확진자 (격리 중)	본인부담금 국비 지원	본인부담금 국비 미지원											
격리 해제 후 28일 이내에 있는 자	-	본인부담금 국비 미지원											

## ② 의료급여 수급권자 관련

연번	질 의	답 변
2-1	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수가 산정 및 청구방법 등은 건강보험과 동일한지?	○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적용함
2-2	방문진료 후 당일 정산과 입원으로 인한 의료급여 정산간강의학과 정액 청구 시 정신(요양·재활)시설 의료 기동전 담반 코로나 19 격리기간 방문료 산정은?	○ 의과 입원명세서에 본인부담금 미지원대상과 분리 청구함 ○ 본인부담금 지원에 따라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(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), MX999 및 JX999(기타내역)를 같이 기재하여 청구함 - 특정내역 작성요령은 건강보험과 동일함
2-3	방문진료 후 당일 정산과 입원으로 인한 의료급여 정산간강의학과 정액 청구 시 정신(요양·재활)시설 의료 기동전 담반 코로나 19 격리해제 후 방문료 산정은?	○ 본인부담금 미지원대상으로 X항 81목에 청구하며 정액수가 외 별도산정 가능함 -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(기타내역)의 작성요령은 건강보험과 동일함
2-4	의료급여(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 포함) 단계별 진료 절차는?	○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(의료급여의 절차) 제1항제7호에 의거 의료급여 단계별 진료 절차 예외 사항에 해당함 -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지침」에 따른 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기간 및 격리 해제 후 28일 이내까지 한시적 허용하며, 이후에는 의료급여 절차를 지켜야 함 * 감염병의 확산 등 긴급한 사유가 있어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